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를 당했습니까? 장애 급여 가이드

NEW YORK STATE | Workers' Compensation Board

뉴욕에서 영리 고용주와 일부 비영리 고용주는 장애 급여(Disability Benefits)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이 보험은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시 현금 급여를 지급합니다. 여기에는 임신 및 출산 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현금 급여

근로자의 평균 주급의 50%, 일주일에 최대 $170까지 지급됩니다.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의 8주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 급여는 사회보장세(Social Security Tax) 대상입니다.

대기 기간은 7일입니다. 급여는 장애 발생 후 8일째부터 시작됩니다. 장애의 14일째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, 또는 보험회사가 근로자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4일 중 더 나중에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첫 번째 급여가 지급됩니다. 장애 기간 동안 급여는 2주마다 지급됩니다.

고용주는 근로자의 장애를 알게 된 후 5일 내에 ***권리 장전 - 장애 급여 법(Statement of Rights - Disability Benefits Law)(양식 DB-271S)***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근로자가 장애와 관계없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, 근로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보험료 및 적용범위

고용주는 장애 급여 보험료를 상쇄하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 분담금은 임금의 0.5 퍼센트까지, 일주일에 최대 60센트입니다.

청구서 제출 방법

1. 장애인이 된 지 30일 내에 ***장애 급여 청구 통지 및 증명(Notice and Proof of Claim for Disability Benefits)(양식 DB-450)***을 고용주의 보험회사(또는 자가보험인 경우에는 고용주)에게 제출합니다. 이 양식은 wcb.ny.gov에 나와있습니다.

   청구가 신속하게 지불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.

   청구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, 제출한 날짜 이전의 2주 이상 기간의 장애에 대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청구서를 일찍 제출할 수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, 늦은 제출이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. 장애가 시작된 시점에서 26주 이상 지난 다음에 제출하거나 직장 복귀 후에 제출한 경우, 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2. 근로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***양식 DB-450의*** **파트 B -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술(Part B - Health Care Provider's Statement)** 부분을 작성하여 양식을 접수한 후 7일 내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.
3. 근로자의 고용주는 **파트 C - 고용주 정보(Part C - Employer Information)** 부분을 작성하여 양식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.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고용주가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신청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언어 지원

Board는 필요한 언어로 서류를 번역해 드릴 것입니다. 또한 청문회에서 근로자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번역이나 통역을 원하시면 (877) 632-4996으로 연락하세요. 가상 청문회를 하실 경우, 체크인 과정에서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임신

장애는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임산부 또는 신규 산모는 자격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,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의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는 진단서(Medical Report)로 장애를 입증해야 합니다. 때때로 보험회사는 광범위한 장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보충 장애 급여 플랜

고용주는 보충 장애 급여 보험 플랜(Supplemental Disability Benefits Insurance Plan)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보충 플랜은 여기에 명시된 의무(또는 법정) 보험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급여를 제공합니다. 플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주에게 직접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에 대해 알아보세요.

실업 보험 및 장애 급여

근로자가 실업 보험(Unemployment Insurance) 급여를 받고 있고 고용 종료 후 4주에서 26주 사이에 장애인이 된 경우, 장애가 발생한 첫날부터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실업 보험 급여와 장애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상해나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워서 추가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되고, 이로 인해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됩니다.

아래 주소로 Workers' Compensation Board에 ***장애 급여 청구 통지 및 증명(Notice and Proof of Claim for Disability Benefits)(양식 DB-450)***을 직접 제출하세요.

Workers' Compensation Board

Disability Benefits Bureau

P.O. Box 9029

Endicott, NY 13761-9029

기타 상황

- **거부된 청구:** 청구가 거절된 경우, 거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을 제출할 곳:

  Workers' Compensation Board

  Disability Benefits Bureau

  P.O. Box 9029

  Endicott, NY 13761-9029

  여전히 장애가 있고, 26주의 장애 급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의 장애 급여가 중단되고,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, 근로자는 장애급여국(Disability Benefits Bureau)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는 의학적 증거를 받은 후 적절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청구에 대해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. 필요한 경우, 해결을 위해 청구가 산재보상 법률 판사(Workers' Compensation Law Judge)에게 회부될 수 있습니다.

- **자동차 사고:**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장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장애 급여 금액은 근로자에게 수령 자격이 있는 무과실 보험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- **사회 보장 혜택:** 근로자가 현재 일하고 있으면서 사회 보장 은퇴 연금(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)을 받고 있는 경우,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회 보장 장애 급여(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)를 받고 있으면서 NYS 장애 급여를 신청할 경우, 두 급여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하게 됩니다(모두 받는 것이 아님).

  예를 들어, 근로자의 사회 보장 장애 급여가 $400이고 NYS 장애 급여가 $170인 경우, $400만 받게 됩니다.

제한

근로자가 일할 경우에는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장애 급여 보험은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선택적 수술로 인한 장애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불되지 않습니다.
잠재적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장애 급여 청구에 관해 근로자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.

KO-WCB-Disability-fs-v4 1-24 Korean

장애 급여 청구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고용주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
장애 급여에 관한 일반 정보에 대해서는 (877) 632-4996으로 연락하거나, wcb.ny.gov를 방문하세요

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(New York State Workers' Compensation Board)는 혜택을 적절히 전달하고 법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인과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 Bo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**wcb.ny.gov**를 방문하세요. **wcb.ny.gov/Notify**에서 Board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세요.